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관세법 제 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중

1. 의결주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정상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냉동 콩치, 냉동 명태 등에 대하여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갈치 조업 미끼용 냉동 콩치의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갈치 조업 미끼용 냉동 콩치를 조정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현행 규정상 2023년 12월 31일까지 22퍼센트의 조정관세를 적용받는 냉동 명태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4. 5. ~ 4. 13. 및 4.19. ~ 4.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로 한다.
별표 1 0303란, 0303.5란 및 0303.59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의 2710란 위에 0303란, 0303.6란, 0303.67란 및 0303.6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303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0303	6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 · 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 · 가디대(Gadidae)과 · 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 · 멜라노니대(Melanonidae)과 · 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 · 모리대(Moridae)과 ·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	67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22%
0303	69	기타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는 제외한다]	22%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4]

2023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호	소호			
0303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0303	5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i>Clupea harengus</i>) · 클루페아 팔라시(<i>Clupea pallasii</i>)], 멸치[엔그라우리스(<i>Engraulis</i>)속],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i>Sardina pilchardus</i>) · 사르디노프스(<i>Sardinops</i>)속],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i>Sardinella</i>)속],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i>Sprattus sprattus</i>)],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i>Scomber scombrus</i>)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i>Scomber australasicus</i>) · 스콤버 자포니쿠스(<i>Scomber japonicus</i>)], 줄무늬 고등어(<i>Indian mackerels</i>)[라스트렐리거(<i>Rastrelliger</i>)속], 삼치[스콤버로모러스(<i>Scomberomorus</i>)속], 전갱이[트라커러스(<i>Trachurus</i>)속], 줄전갱이류[카랑크스(<i>Caranx</i>)속], 날새기[라키센트론 카나둠(<i>Rac</i>		

		<i>hycentron canadum</i>)], 병어 [팜푸스(<i>Pampus</i>)속], 쾡치[콜로라비스 사이라(<i>Cololabis saira</i>)], 가라지[데캅테러스(<i>Decapterus</i>)속], 열빙어[말로투스 빌로서스(<i>Mallotus villosus</i>)],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i>Xiphias gladius</i>)], 점다랑어[유티너스 아피니스(<i>Euthynnus affinis</i>)], 버니토[사르다(<i>Sarda</i>)속], 새치류, 돛새치, 청새치[이스티오포리대(<i>Istiophoridae</i>)]. 다만, 제 0303.91호부터 제 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	59	기타	쾡치[콜로라비스 사이라(<i>Cololabis saira</i>)](머리부터 꼬리까지의 전체 길이가 22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갈치조업 미끼용은 제외한다)	2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관세율을 인상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u>별표 1부터 별표 3까지</u> 와 같다.	----- ----- <u>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u>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연 락 처	(044) 215 - 4433